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27 발의연월일: 2021. 10. 12.

발 의 자: 김성주·고민정·고용진

김민석 · 김원이 · 남인순

박상혁 · 서영석 · 소병철

신영대 · 양정숙 · 윤준병

이용빈 · 이학영 · 임호선

전용기 · 정춘숙 · 조승래

최종유 · 최혜영 · 허종식

홍성국 · 홍정민 · 황운하

의원(24인)

제안이유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새로이 찾아주는 보호형 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함. 이에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구축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민간 입양기관은 후원금과 해외양부모로부터 받는 해외입양비용(약 2천만원),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국내입양비용(270만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양부모 선호를 우선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을 입양보내는 것이 입양기관 운영에 유리하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구축된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민간 입양기관이 예비양부모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 후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구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이전에 법적 근거 및 공적결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양전제위탁이 이뤄지고, 그 기간 중 아동-입양부모 간 안정적 상호적응 지원 및 상담체계 등이 부재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입양기관의 협력을통해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지난 2013년 서명한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는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법」에서 별도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제입양에서 국내입 양으로 한정함(안 제1조).
-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 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36조)
- 라. 입양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 하여야 함(안 제16조).
- 마.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두어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의 확인, 결연, 입양전제위탁에 관한 사항,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17조).
- 바. 입양전제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전제위탁을 의무화함(안 제19조).
- 사.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간의 사후서비스 제공 주체를 입양기관의 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상 아동을 말한다.
-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4. "국내입양"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의 입양을 말한다.

- 5. "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입양전제위탁"이란 제20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이전에 양자가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7. "본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적국을 말한다.
- 8. "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 보장원을 말한다.
- 9.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 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입양후의 가정생활에서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6.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가족 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의 양부모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또는 아동 최선의 이

- 익을 위해 국내입양보다는 국제입양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국제입양 법」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국내 입양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이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제19조에 따른 입양전제위탁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 전까지 제1항의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나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등에 해당 아동을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있어서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11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보호업무를 위탁받고 아동을 인도받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의 장은 그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입양 또는 「국제입양법」에 따른 국제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4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의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2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 라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
-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 야 한다.
-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낙은 제20조제 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 제13조(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아동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모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제3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 제14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전에 입양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동의 및 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전에 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없을 것
 - 4.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②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

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 제16조(입양의 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 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입양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5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 추었는지 여부
 - 2.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과의 결연
 - 3. 입양전제위탁에 관한 사항
 - 4. 「국제입양법」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

- 5. 「국제입양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2.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명
- ③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입양 정책 및 실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결정 이후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9조(입양전제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결연된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전제위탁 기간 중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과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전제위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입양전제위탁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제20조에 따라 입양 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0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 2. 제10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서류
-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 5.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 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입양전제위탁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 허가 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 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제22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양전제위탁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 인용심판 확정 후 양자가 될 아동 또는 양자를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한다.

- 제24조(입양의 취소) ①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양자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입양의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제25조(파양) ① 양친, 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민법」 제90 8조의5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양자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 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파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제26조(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
 - 2. 제25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파양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확정사 실을 통보한 아동
- 제27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이 법에 따라 양부 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 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경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동의 및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본국법에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 및 제2항의 동의 및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

- 제28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에 필요한 서비스
 -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제29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 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

-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 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고,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결과 통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3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 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제3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은 입양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33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0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0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 2. 제17조에 따른 입양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3.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5장 벌칙

-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 2. 제20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4. 제33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② 제18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 입력에 관한 적용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및 입양 전 아동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은이 법 시행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4조제1항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2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 행위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와 그 벌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입양특례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